

지속가능발전센터운영규정

제 정 : 2019. 9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지속가능발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금강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센터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(운영 목적) 지역사회교류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의 사업을 지원하고, 이를 지속적
으로 연구, 조사, 교육,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센터장)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직원) 본 센터에는 연구교수, 초빙교수, 산학협력교수, 사무직원 및 행정조교,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사업)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①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을 위한 연구, 조사, 교육, 홍보
- ②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지원 및 관리
- ③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의 개선·보완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

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본 위원회는 본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1.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2. 본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본 센터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- 4. 자문위원회 등 업무와 관련된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5. 필요 인력에 관한 추천사항

제9조(자문위원회) ① 본 센터의 목적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한다.

③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감사) 본 센터의 감사는 본 대학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